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6. 4. 4
- 상정일자
 - 2006. 4. 20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례를 제정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자의 범위 (안 제1조 내지 제4조)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장업무, 공무원(안 제5조 내지 제6조)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17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등(안 제10조 내지 제16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심사추진 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3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4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5.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자의 범위 (안 제1조 내지 제4조)

- 현재 각·시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에 대해 금번에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조항이 없어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 3P)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17조)

- 이 사항도 「제주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기존 시·군 조례를 인용하여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 시·군에 있던 조례를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관리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시설의 명칭 및 위치)이 조례의 적용 대상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대상시설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제주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안 제11조중 “별표1”를 “별표2”로 한다.

안 제16조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안 [별표1]를 [별표2]로 한다.

안 [별표2]는 [별표3]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제2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명	소재지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제주시 건입동 553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강정동 1481-3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68-1

2. 청소년수련원

시설명	소재지
제주 청소년수련원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19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
안덕 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50
성산 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500

3. 야영장

시설명	소재지
모구리 야영장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60-1

4. 유스호스텔

시설명	소재지
제주시 명도암 유스호스텔	제주시 봉개동 234-66

5.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명	소재지
화북 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화북1동 1618
도평 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도평동 872-1
이도1 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이도1동 1664-7
용담1 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용담1동 311
도남 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도남동 57-4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집	서귀포시 서귀동 269-4
송산 청소년 문화의집	서귀포시 서귀동 556-2
추자 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73-5
남원 청소년 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500
신산 청소년 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036-2

□ 조례안 및 수정안 대조표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명 <u>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 소년수련시설의 <u>관리 및 운 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 용 대상시설은 「청소년활 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대상시설로써 공공의 목적 으로 <u>제주도가 설치한 시 설</u>을 말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사용 자는 사용허가시 <u>별표 1</u>에 의한 사용료를 수련시설의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하 며, <u>별표 1</u>에서 정하지 아니 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 준에 의한다.	제명 <u>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 소년수련시설의 <u>설치 및 운 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시설의 명칭 및 위치)이 조례의 적용 대 상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 법」 제10조제1호의 대상시설 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u>제주 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사용 자는 사용허가시 <u>별표 2</u>에 의한 사용료를 수련시설의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하 며, <u>별표 2</u>에서 정하지 아니 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 준에 의한다.	• 조례내용에 맞게 제명 변경 • 설치를 조례의 목적에 추가 • 명칭과 위치 추가 • 조문 정리에 따른 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u>별표 2</u> 와 같 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u>별표 3과</u> 같 다.....	• 조문 정리에 따른 수정
(신설)	(별표 1) : 내용 별지	• 명칭 및 위치를 삽입
(별표 1)	(별표 2) : 안 별표 1 내용이 기	• 조문 정리에 따른 수정
(별표 2)	(별표 3) : 안 별표 2 내용 이기	• 조문 정리에 따른 수정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6. 4.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건전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9조)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및 제17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3. 6 ~ 3. 25

- 의견수렴결과(따로붙임) : 3건(반영 2건, 미반영 1건)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제주도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대상시설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제주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일반"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3조제4호에 의한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및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4.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소지가 명백한 자
 3.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관장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용 수수료 및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

④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게 연 1회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위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 하게 관리해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없이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 및 관리 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위 수탁·협약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허가) ①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를 시설사용일 15일전까지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기간내에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청소년의 수련활동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활동

3. 일반인의 수련활동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수련시설의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5. 7세 미만의 어린이와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6. 청소년단체등이 1일 이내의 행사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일 경우 면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면제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제주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
2. 수련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원상회복) ①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위탁수련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했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련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 10,000원)		20,000	- 무대사용(객석제외)은 기준액의 50%
다목적실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 10,000원)		50,000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육실)	3시간 기준		20,000	
예절관(교육)	2시간 기준		10,000	- 1시간 초과시 10,000원
스쿼시장	1인/1시간		3,000	- 청소년 무료
골프연습장	1인/2시간		4,000	- 청소년 무료
한국야구 명예전당	일 반	개 인	1,000	- 단체 : 20인 이상
		단 체	700	
	청소년	개 인	600	
		단 체	500	
	어린이	개 인	500	
		단 체	400	
숙박시설	1인/1박	청소년	3,000	- 당일 12 : 00부터 익일 12 : 00까지
		일 반	6,000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부대시설	조 명 시 설	2시간 기준	20,000	
	냉 · 난방시설	2시간 기준	20,000	

- 스쿼시장과 골프장인 경우 1인 1일 1회에 한하며,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시간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수련시설내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수련원명				비고
			제주	비자림	안덕	성산	
생활관 (숙박료)	1인/ 1박	청소년	5,000	4,000	3,000	3,000	
		일반	8,000	6,000	5,000	5,000	
식비	1식	청소년	3,000	3,000	3,000	3,000	
		일반	3,500	3,500	3,000	3,000	
강당	2시간 이내	청소년	50,000	20,000	20,000	20,000	1시간 초과시 10,000원
		일반	100,000	30,000	30,000	30,000	
회의실	2시간 이내	청소년	30,000	20,000	-	-	1시간 초과시 10,000원
		일반	60,000				
야영지	1인1박	청소년	-	1,000	-	-	- 단체 20명 이상 10% 할인 - 100인 이상인 경우는 30% 감면
		일반	-	1,200	-	-	
샤워시설	1회		-	500	-	-	
피아노(대형)	2시간 이내	청소년	30,000	-	-	-	1시간 초과시 10,000원
		일반	50,000				
가요반주기	2시간이내		50,000	50,000	-	-	1시간 초과시 20,000원

3.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야영장	1인/1박	청소년	1,000	- 단체 20명 이상 10% 할인 - 100인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의 30%감면
	1인/1박	일반인	1,200	
잔디축구장	1일	청소년	40,000	
		일반인	60,000	
대피소	1인/1박	청소년	3,000	- 기상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 100인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의 30%감면
		일반	5,000	
대피소내 강당	1회/4시간	청소년	30,000	- 기상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일반	50,000	
인라인스케이트장	1일/4시간	청소년	1,000	- 개인
		일반	2,000	
서바이벌게임장	1일/2시간	청소년	20,000	- 단체
		일반	30,000	

※ 야영장 사용기준

- 야영장 숙박 시간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 이용시(20인이상)는 잔디축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청소년 미만의 자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16조관련)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	09:00 ~ 21:00	○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06:00~22:00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	24시간	
청소년문화의집	09:00 ~ 21:00	

2. 휴관일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관(월요일)

4. 제주시 명도암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청소년	일반	
숙박실	1인/1박	6,000	8,000	- 단체 및 유스호스텔 연맹회원증 소지자에 게는 숙박료에 한하여 10% 할인
식 대	1인/1식	3,500	4,000	
강 당	3시간 이하	70,000		- 초과시간 적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3시간 이상 1일이하	100,000		- 가상악화로 대피시설로 이용시 무료사용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상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참 가	명	어른	명		
		~ 20 년 월 일	예정인원		청소년	명		
신청프로그램								
행 사 주요계획	행 사 명							
	행사개요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구분	부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료		
지원프로그램					
입장일시	년 월 :	박 일	참가예정 인 원 명	청소년	
퇴장일시	년 월 :			일 반	
허가조건	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명		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면제종류	전 액					
면제사유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제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증인서

신 청 인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면제종류	전 액			
감면사유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제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관계법령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

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의견수렴결과

제안자	제안의견	검토결과									
제주시 (양성평등 지원과)	○ 제11조 별표 1중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중 강당사용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현행</th><th>변경</th></tr> </thead> <tbody> <tr> <td>3시간이하</td><td>100,000원</td><td>70,000원</td></tr> <tr> <td>3시간이상 1일이하</td><td>150,000원</td><td>100,000원</td></tr> </tbody> </table> 초과적용시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봄	구분	현행	변경	3시간이하	100,000원	70,000원	3시간이상 1일이하	150,000원	100,000원	○ 반영 - 제주시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제주시 의회에서 ('06. 3.23)의결
구분	현행	변경									
3시간이하	100,000원	70,000원									
3시간이상 1일이하	150,000원	100,000원									
북제주군 (사회복지 여성과)	○ 제3조제6항 “청소년” 용어의 정의 - 조례원안 6.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제안의견 6.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u>단 25세이상의 자 중 학생증 등을 소지한 학생은 청소년에 포함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u>	○ 미반영 - 상위법위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안자	제안의견	검토결과
북제주군 (사회복지 여성과)	○ 제8조제3항 “수탁자의 의무”중 위탁 연장에 관한 사항 - 조례원안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u>계약만료 2개월전까지</u>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제안의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u>계약만료 3개월전까지</u>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반영